

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·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
2.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
3.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협의회는 의장,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(다만, 계룡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생길 경우 교육장이 된다).

③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의장등의 직무)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간사 등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복지문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.

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
제8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